

조기재취업수당

● 사업목적

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시키고 **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**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

● 지원대상

아래 ①, ②를 모두 충족시 지급

- ① 대기기간(실업신고일부터 7일)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
- ② 재취업일 기준 잔여 급여일수가 1/2 이상인 경우

● 지급제외

- ①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(인수·합병·분할, 영업의 양도·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)에게 재고용된 경우
- ②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
- ③ 대기기간(실업신고일부터 7일) 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/2 미만인 경우
- ④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
- ⑤ 영업을 게시한 자의 경우 : 자영업을 개시(사업자등록(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함), 채권추심, 보험설계, 다단계, 영업딜러, 학습지 교사, 프리랜서 등) 하였더라도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

● 지급액

잔여 급여일수의 1/2

● 청구방법

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

● 지원문의
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: 1350
- 고용보험 홈페이지 : www.ei.go.kr
- 워크넷 : www.work.go.kr